

이슈 3

건설분야 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동향과 향후 과제

[이슈 3]

건설분야 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동향과 향후 과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이후 본격적인 녹색 건축 확산 추진

- ◎ 우리나라는 2009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목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였음.
 - 이에 따라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2014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실시, 2010년·2015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등이 본격 추진됨.
- ◎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2012년 7월 통합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체계화함.
 - ‘환경 영향 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사업이 경제성과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게 하는 제도임.
 - 2023년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음.
- ◎ 2013년 2월,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기존 중복적으로 운영되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제정됨.
 - 2002년 1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시작한 이래, 업무용 건축물, 주거복합건축물, 학교시설 등으로 확대됨.
 - 2005년 「건축법」상에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신설하였고, 2008년 5월에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이 개정·공포되어 2010년 7월 시행됨.
 - 또한, 2012년 7월에는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 기준의 통합기준 및 기존 건축물 인증기준, 소형주택 인증기준으로 재정비됨.
 - 2013년 2월, 「건축법」에 근거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사이 중복된 인증기준이 많아 건축주의 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녹색건축물 인증으로 통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함.

- ◎ 현재 녹색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을 통칭하고 있으며, 각각의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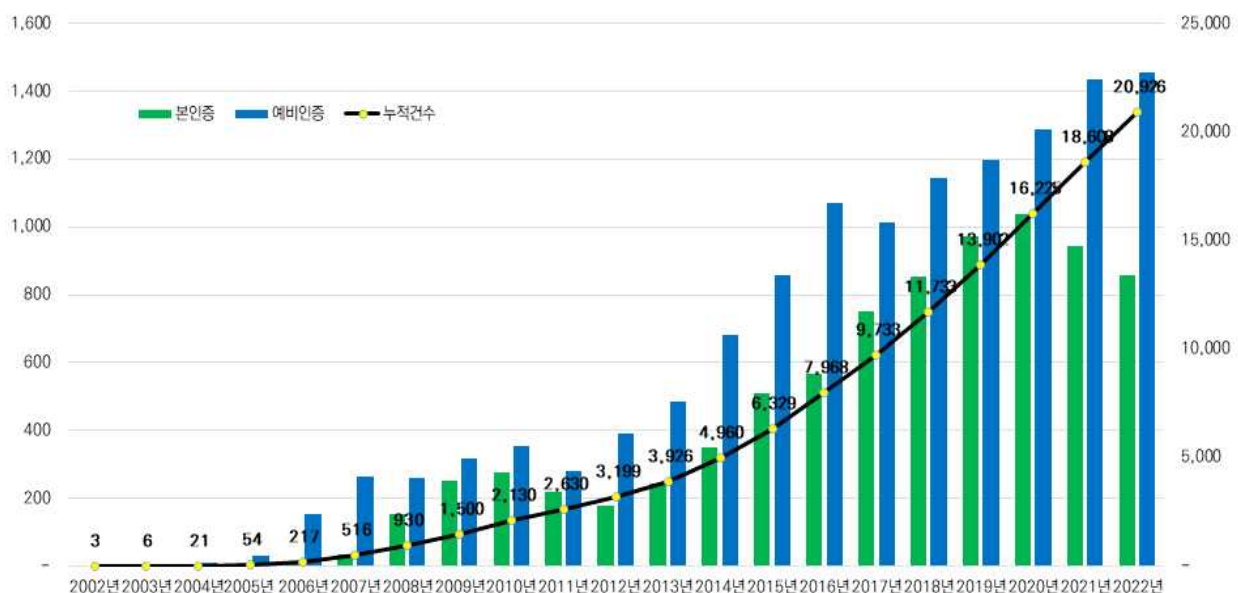
녹색건축물 등 관련 제도 시행의 실질적 성과는 미흡

- ◎ 에너지 저감과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및 신규 건축물, 주거단지 등의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음.
- 기존 건축물의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시재생 뉴딜 그리고 에너지 저감기술의 지속적인 활용을 유인하고 있음.
 -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 건축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에너지 생산기술을 갖춘 건축물 확산을 제도화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⁵⁾를 통해 건축물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

■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성과 및 문제점

- ◎ 2002년 이후 2022년까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모두 2만 926건으로 본 인증은 8,218건, 예비인증은 1만 2,701임.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1> 녹색건축물 인증 누적 현황



자료 : 녹색건축인증통합시스템.

5) 2017년부터 공공기관 10,000㎡ 이상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함.

- 인증등급별로는 일반(4등급)이 전체의 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수(2등급) 및 우량(3등급), 최우수(1등급) 순임.

〈표 1〉 녹색건축물 인증(본인증+예비인증) 누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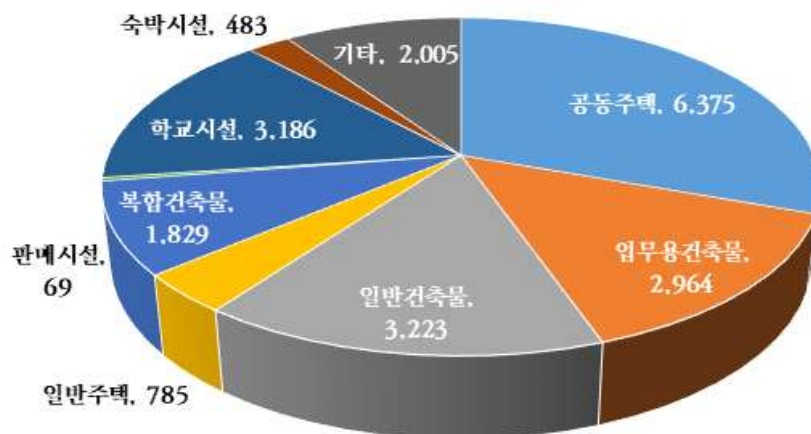
구분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합계
건수	895	6,659	2,715	10,650	20,919
비율	4.3%	31.8%	13.0%	50.9%	100%

자료 : 녹색건축인증통합시스템.

- 사용 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이 전체의 1만 1,036건으로 전체의 52.8% 그리고 민간부문이 9,883건으로 47.2%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도가 1만 2,368건으로 전체(세종시, 국외지역 등 제외)의 59.6%이며, 6대광역시 17.7%(3,667건), 나머지 광역도가 22.7%(4,716건)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 및 경기권에서 인증이 활발함.
- 시설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6,375건으로 전체의 30.5%, 다음으로 일반건축물 3,223건(15.4%), 학교시설 3,186건(15.2%), 업무용건축물 2,964건(14.2%)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 녹색건축물 인증(본인증+예비인증)의 용도별 현황

(단위 : 건)



자료 : 녹색건축인증통합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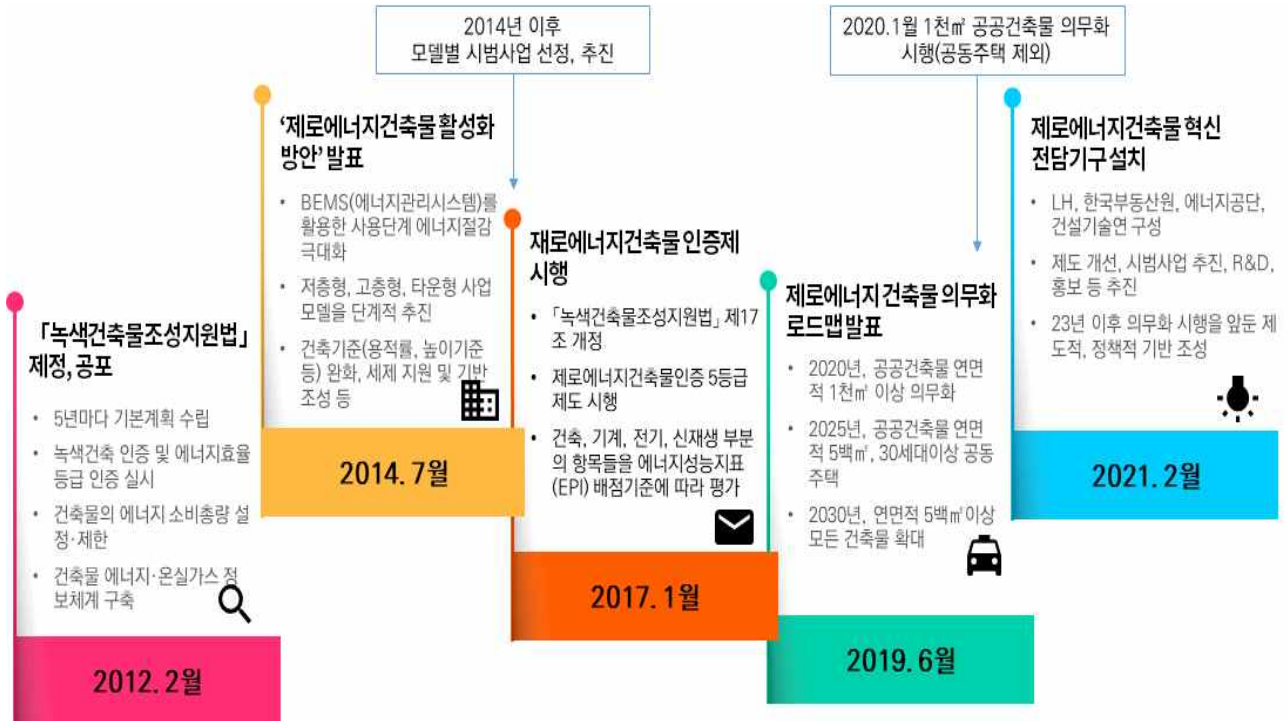
- ◎ 이렇게 인증 건수가 증가한 것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주택법」, 「건축법」에 의거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되었고, 인증 시 인센티브제도가 운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인증이 의무임.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함.
 - 또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녹색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 현행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인센티브제도는 크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연계한 세제 혜택, 사업 추진 시 기준 완화 그리고 조달청의 PQ 가산점 제도와 건축비 가산비용 반영 등이 있음.
- ◎ 반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 동안, 양적인 측면에서는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가 있었으나, 질적인 측면의 실질적인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상황임.
- 녹색건축물 인증의 50% 이상이 최하위 등급인 일반등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의무화에 따른 영향이 크며,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발주자의 참여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방증하고 있음.
 - 또한, 신축 혹은 증축 건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신축 건축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것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음.
 - 2022년 말 현재, 누적 건수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의 비중이 53% 대 47%로서 민간부문의 인증 건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건축 시장에서의 물량을 고려할 때, 여전히 민간부문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도는 낮게 평가됨.

■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의 운영성과 및 문제점

- ◎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7년 시행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도 인증 의무화 및 인센티브제도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함께 지속 확대되고 있음.
-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2014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래 2017년 1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명시하였음. 또한, 2019년 ‘제로에너지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입법 예고하였음.
- 2014년 발표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방안’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저층형, 고층형, 타운형 사업 등)의 시행,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제도를 포함하고 있음.

〈그림 3〉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정책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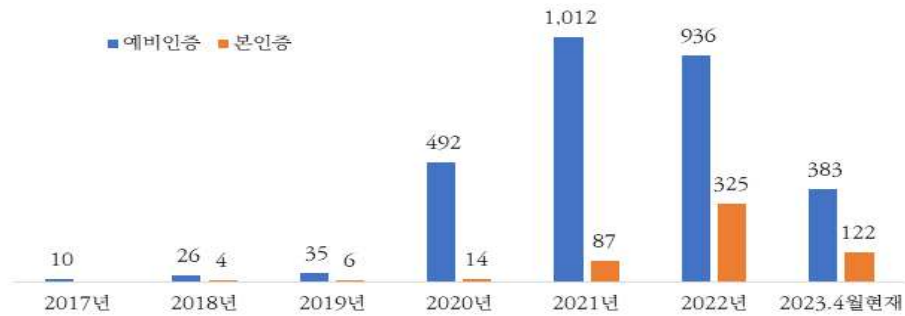
- 로드맵은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신축건축물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범위 확대를 예정하고 있으며, 2050년 전 건축물의 1등급 수준을 의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림 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 ◎ 2023년 4월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3,452건으로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의무화 이후 인증 건수는 급증하고 있음. 예비인증이 2,894건, 본 인증이 558건으로 의무화 로드맵의 이행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수 현황



자료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시스템.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별로는 현행 의무대상의 기준이 되는 5등급이 전체의 62.7%를 차지하여 의무화에 따른 강제성으로 인한 취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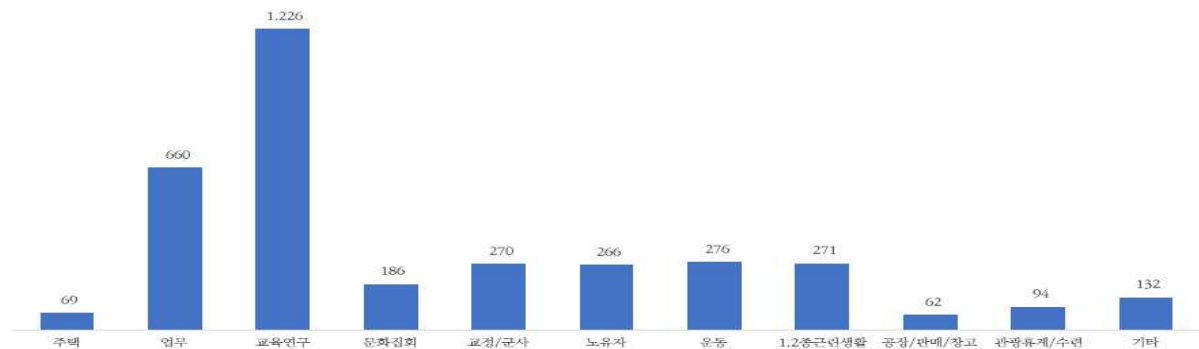
〈그림 6〉 제로에너지 건축물 누적 인증등급별 현황



자료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시스템.

- 시설물 용도별로는 교육 및 연구시설이 전체의 35.5%(1,22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업무용 시설(660건) 그리고 운동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교정 및 군사시설 등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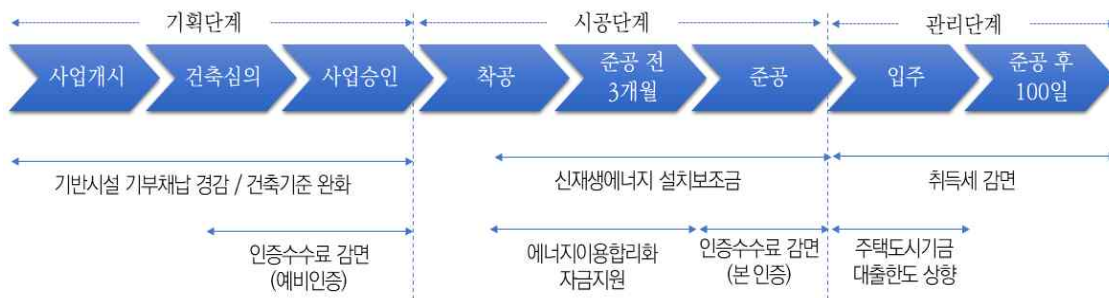
〈그림 7〉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시설의 용도별 현황



자료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시스템.

- ◎ 2017년 도입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인하여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인식 및 민간부문의 유인 등은 여전히 낮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2023년 4월 현재 인증 신청자 기준으로 민간부문의 인증 건수는 196건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함. 민간부문의 신청 시설물도 대부분 재정비사업 관련 학교 및 공원 시설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민간건축물 분야의 인증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임.
 - 이를 고려할 때,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가 5년 이상을 운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 질적인 측면에서 5등급, 4등급이 전체 인증 건수의 85.3%를 넘어 의무화에 따라 인증기준을 맞추는 데 급급한 상황으로서, 실질적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효용성과 제도 시행의 정책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아울러, 제로에너지 건축 관련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는바, 실제로 사업의 기획단계(설계 및 심의, 인허가 등)에서 시설물 이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공상의 추가적인 비용 대비 인센티브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8〉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제도 현황



최근 국내외 환경 규제의 증가, 산업 전반에 영향 클 전망

-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이슈의 급성장에 따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환경이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국가적,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2022년 11월, 글로벌 환경 공시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6)'가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의 IFRS S2(기후 관련 공시기준)와의 통합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경제 전반에 기후 데이터 공개가 조기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6)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700만 2천 22개 기업이 CDP를 통해 환경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규범들을 속속 제도화함에 따라서 환경 문제는 국제적인 새로운 통상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문제는 기업 및 산업의 리스크 관리 요소로 확고히 굳어지고 있는 양상임.
- ◎ 우리 정부에서도 최근 글로벌 환경 규제에 맞추어 글로벌 수준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특히, 2022.3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하여 확정되었음.

〈그림 9〉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추진체계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3.4),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 특히, 건설 및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2021.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음. 특히, 핵심적인 정책과제로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등이 포함됨.
 - 금번 기본계획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실현이라는 대전제하에서 분야별 이행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많은 사회적 과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이 시사하는 의미와 제기되는 이슈들을 바탕으로 정책과제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 글로벌 환경 규제의 강화와 국내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범정부부처들의 이행 활동 강화는 건설산업을 비롯한 대부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요구는 강화될 것이며, 공시기준도 현재 수준에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기후 관련 공시항목의 전략적 관리가 기업의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영역으로 확장될 것임.
 - 특히, EU 및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환경 관련 규범이 확대됨에 탄소 배출을 비롯한 환경 문제를 다루는 통상 규범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거래에 있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세’⁷⁾ 등 탄소 관련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됨.
 - 또한, 현재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이 본격화될 경우, 실질적인 실행 주체인 기업 및 산업계와의 의견 충돌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
- ◎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에 대해서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최근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부담을 느끼고 있음. 탄소 중립을 내세운 관련 법안이나 행정이 기업과 산업 실상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은 지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임.
- ◎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시공과정과 건축물 분야의 친환경성 제고와 실질적인 국가 및 글로벌 환경에서 요구하는 환경 이슈에의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등 주요국들의 정책 추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시기에 도입하였으나⁸⁾, 당초 의도한 목표에는 크게 미달한 상황이며, 또한, 이러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 및 목표에 대한 기업 및 산업계의 이해도가 낮은 상황임.
 - 지금까지의 정책이 건설산업 차원의 전반적인 친환경성을 고려한 정책보다는 건설생산 이전 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영향, 실질적인 건축 및 시공과정에서의 전반적인 환경평가보다는 결과물로서의 건축물,

7) 탄소 고배출 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로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로서 유럽연합(EU)이 2021년 7월 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 입법안도 동시에 공개했고 2022년 12월 12일 도입에 잠정 합의했음. 지난 2023년 4월 18일, EU의회에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8) 실제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음.

기계설비 및 장비, 자재 등 생산요소의 인증 등 단편적인 평가에 국한되어져 있음.

- 이와 함께 건설산업 차원에서의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실행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거나 이를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정책 추진과정에서 의사소통 및 지원 정책 적극 모색 필요

- ◎ 건설 분야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저감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선 보다 실천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산업 전반에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및 유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산업 내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이행이 필요한 상황임.
- ◎ 첫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 시점인 2030년까지 7년이 남은 상황을 고려할 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세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등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행방안들이 제시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감축 목표의 실현과 실행 주체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적용 및 인프라, 제도적인 기반 및 강력한 추진 거버넌스, 국제적인 정책 변화에 대응한 철저한 계획의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인 시책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 둘째, 현행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인증제도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바, 인증제도의 정비와 기업 및 산업계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건축물 인증 및 평가와 관련하여 ‘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장수명 주택인증’, ‘지능형 건축물인증’, ‘교육시설안전인증’, ‘제로에너지인증’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검토’ 등 각종 인증 및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각각의 인증 및 평가제도들이 목적성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통합 및 조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증제도들의 통합 및 조정은 실행 주체인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있어서는 공사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비에 대한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다양화하고, 기준을 상향하는 노력이 요구됨. 실제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만 하더라도 등급 간 인센티브의 격차가 작아 상위 등급에 대한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개인, 기업, 공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용도별, 규모별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영국은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 비영리기관 대상의 시공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프랑스의 경우에는 노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자금조달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계 주요국가들은 보다 세분화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인센티브의 시행주체가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분산되어 있어, 관련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실용적, 행정적 지원 및 제반 모니터링 등이 분산되고 있는바, 인센티브의 시행, 제도의 운영 등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함.
 -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민간 실적이 거의 없는 공동주택 부문 특히, 민간 분양 공동주택의 참여를 유인해야 함. 2024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인증이 의무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민간 분양 공동주택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
- ◎ 셋째, ESG의 성장과 함께 건설산업 전반에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 참여자 간 협력체계의 구축과 장기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정부부처와 건설분야의 친환경 기술의 개발업체 및 개발자 그리고 건설자재 및 장비, 설비업체, 시공업체,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의 친환경성 제고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 현재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특허 출원 실적을 보면, 전체 특허 출원인의 39%가 중소기업, 34%가 개인으로 중소기업 및 개인의 특허 출원 건수가 전체의 70%를 넘고 있음. 정부의 개발된 기술의 활용 확대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양한 사업 추진 주체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친환경성 제고는 최근 글로벌경제 환경 속 ESG의 급성장과 함께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음. 친환경성 의무화 정책 등 단기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산업 내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ESG는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은 물론, 개별사업의 환경적 요소의 고려 등 종합적인 측면의 환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바, 현재 프로젝트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의 경우도 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평가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민해야 함.
- ◎ 궁극적으로 현재 건설 및 건축물 관련한 정부 정책의 목표는 '건설산업 전반의 녹색산업화'에 두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전체의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행해야 하는바, 녹색건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